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로 알아보는 증인보호제도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서는 어린 아이를 법정에서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형사법정에 재정하여 진술하는 대신, 화면을 통해 진술하는데요.

‘증인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배우 수지, 이종석이 주연으로 나왔던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는 미래에 닥칠 불행한 사건·사고를 굶으로 미리 보는 남홍주(수지)와 그 꿈이 현실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검사 정재찬(이종석)의 이야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종영했습니다.

드라마 24회의 한 장면에서 정재찬(이종석)은 살인사건을 목격한 어린 아이를 법정에서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이는 형사법정에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굳이여, 아이는 TV화면을 통해 재판과 대화하며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형사법정에 직접 등장하지 않고 증인 신문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바로 ‘증인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지식을 알아보을까요?

증인

법원(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신이 실제로 체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증인신문

증인으로부터 그 체험 사실의 지술을 듣는 절차, 즉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절차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제146조(증인의 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절 차

증인 동일성 확인-친족관계 확인 및 위증의 별 경고-증인선서-신문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증인신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여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 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5조).

또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진술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놓인 자와 동석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7조).

드라마의 경우, 살인 사건을 목격한 아이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 했으며 그로 인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 할 것을 고려하여 법정 내 화상증언실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증인보호조치

증인의 신변안전보호조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증인신문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の特례 등)

- ① 제7조에 따라 조서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에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

-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 증인선서, 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환된 증인의 신원확인은 검사가 제시하는 신원관리카드로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선서서(宣誓書)에 가명으로 서명·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⑤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退廷)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재판장 또는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